

광주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19가단5427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7230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19가단542719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종결 2021. 10. 26.

판결 선고 2021.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피고와 D(개명전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20.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 2019. 11. 20. 접수 채권가액 10,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5.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10995호로 D가 원고의 배우자인 B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1. 5. 'D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위자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1. 21. 확정되었다.

나. D는 2020. 2. 3. '원고가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고 자신이 변제공탁을 하여 위 판결상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가단1894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20. 3. 24. 아래 조정조항 기재와 같이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 (1) D는 원고에게 2020. 4. 7.까지 256만 원을 지급한다.
- (2) 원고는 D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는 즉시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8232, 2019타채70737, 2019타경75007 사건의 각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한다.
- (3) 원고의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10995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20. 4. 8. 이 법원 2020재가단50009호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이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2. 8. 준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20나703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1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한편 D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1. 20. 피고와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저당권설정등록(접수번호 F, 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자료판결에 기한 8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20. 피고와 위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위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는데, 위 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자료판결에 기한 8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D가 제기한 이 법원 2020가단1894호 청구이의의 소에서 'D가 원고에게 256만 원을 지급하고 위 위자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E으로부터 25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조정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8. 준재심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11. 11. 항소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조정 및 E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효영

별지